

신규 법규정 업데이트

2020년 8월 뉴스레터



Content

베트남은 현재 COVID-19 이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인 측면에서 일련의 중요한 변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 주요시장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 될 때 이용 가능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역량을 최대한 전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 Tax Newsletter에서는 최근에 발표 된 여러 정책을 업데이트 하려고합니다.



No.116/2020/QH14 결의안에 따른 2020년 법인세 30% 인하



투자법 2020 No. 61/2020/QH14



기업법 2020 No. 59/2020/QH14



시행규칙 No.13/2020/TT-BTTTT 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식별



시행령 No. 68/2020/ND-CP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자비용 손금산입한도) 에 대한 공문No. 2835/TCT-TTKT상세 가이드 제시



국세청 공문 No. 2014/TCT-DNNCN: "직원비자 및 임시거주증 신청 비용" 에 대한 PIT 과세 여부



공문 No. 3552/CT-TTHT: 직원들에게 선물 증정시 PIT 과세 여부

1.No.116/2020/QH14 결의안에 따른 2020 년 법인세 30% 인하

결의안 116 / 2020 / QH14 ("결의안 116")는 2020 년 6 월 19 일 베트남 법률에 규정 된대로 기업, 가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조직에 대해 2020 년에 납부해야하는 법인세 감세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 2020 년 총 매출액이 2 천억 VND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2020 년에 납부 해야하는 법인세액의 30 %를 인하합니다.
- 각 기업은 자체적으로 법인세 분기에정납부액 및 2020 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액에 대해 세금 감면액을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서명 한 날로부터 45 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2020 년의 과세기간에만 적용됩니다. 정부는 "결의안 116"의 이행을 규제하는 법령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고 구하는 중입니다.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본 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투자법 2020 No. 61/2020/QH14

2020 년 6 월 17 일, 2014 년 투자법을 대체하여 발행 된 제 14 차 국회에서 발행 된 투자법 61 / 2020 / QH14 ("투자법 2020")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새로운 투자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추심업 금지
- 조건부 비즈니스의 종류 축소 (예: 프랜차이즈, 물류, 운송대행 서비스 등)
- 조건부 비즈니스 항목 추가 : 정수사업(일상 생활용수), 건축서비스업
- 고등교육, 6,000억동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 혁신적인 스타트업 프로젝트, 중소기업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투자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 프로젝트 조건에 대하여 투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지니스를 추가 및 개정하였습니다.
-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기업들의 이전가격 제한, 조세회피 및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투자 자본금, 기계장치 및 기술에 대한 평가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베트남 정부가 "중지된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들을 완전히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계획이 철회된 투자자의 토지가 철수 된 경우와 같이 "투자프로젝트 종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3. 기업법 2020 No. 59/2020/QH14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기업법 59 / 2020 / QH14 (2020년 6월 17일 발표)은 기존 기업법 No. 68 / 2014 / QH13에 관한 법률을 대체합니다.

법인인감을 기업등록국(BRO)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가 삭제됩니다. 이로써 기업은 "전자거래" 법률에 따라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정의가 변경됩니다. 국영기업의 조건이 기존 국가지분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NVDR(Non-Voting Depository Receipts)에 대한 조항이 수정되었습니다.

영업 정지 혹은 재개일 최소 3일전에 기업등록국(BRO)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시행규칙 No.13/2020/TT-BTTTT 에 따른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식별

2020년 7월 3일, 정보통신부는 시행령No. 16/2014/TT-BTTTT("시행령 16")을 대체하기 위한 시행령 No.13/2020/TT-BTTTT("시행령 13")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식별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2020년 8월 19일부터 주요한 콘텐츠들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주요한 몇몇 콘텐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세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제품 생산 식별이 필요합니다.
- 적용대상: 정보 통신부에서 지정한 소프트웨어 목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및 기업.



시행령13은 시행령16에 규정된대로 7 개의 소프트웨어 생산 프로세스를 유지하지만, 시행령13은 각 프로세스에서 각 작업의 세부 사항을 더욱 명확하게합니다.



또한, 이전 시행령 16의 6 조 2 항 a, b, c에 명시된 내용에 비해, 소프트웨어 생산 결정에 관한 조항은 시행령 13에서 더 간단한 방식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조건 중 최소 한 조건을 만족 시키는 경우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조직 또는 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요구사항 정의 가능 혹은 2) 소프트웨어 제작에 대한 분석 및 디자인 가능. 이와 동시에, 소프트웨어 제작은 하나 혹은 몇 가지의 서류로써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본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규정 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결정된 소프트웨어 생산은 승인 된 투자 프로젝트가 만료 될 때까지 소프트웨어 생산의 요구 사항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시행령 No. 68/2020/ND-CP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자비용 손금산입한도) 에 대한 공문No. 2835/TCT-TTKT상세 가이드 제시

2020년 7월 14일, 국세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는 기업의 이자비용 손금산입 한도에 관한 시행령No.68/2020/ND-CP의 규정에 대한 상세 가이드를 제시한 공문No. 2835/TCT-TTKT을 제시하였습니다.

2019년 확정신고

- 2020년 3월 31일까지 확정신고되어야 하는 2019년 법인세액분에 대해서는 금번 시행된 시행령 68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 만약, 기업에서 아직 2019년도 법인세액분을 확정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시행령 68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017년, 2018년 소급적용

- 2017 년과 2018 년간, 시행령 20의 3 조 8 항에 해당되는 이자비용의 소급적용은 다음 규정에만 적용됩니다.
 - 공제 가능한이자 비용 한도 : 20 %에서 30 %로 증가
 - 순이자비용 계산식 : 대출이자비용 (-) 예금이자/대출이자 수익
- "시행령 68" 의 Point (b) (차기 이월공제) and (c) (적용대상 확대) 는 2017년과 2018년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6. Official국세청 공문 No. 2014/TCT-DNNCN: “직원비자 및 임시거주증 신청 비용” 에 대한 PIT과세 여부

2020 년 5 월 18 일, 국세청은 직원을 위한 임시거주증 및 비자 취득비용에 대한 PIT 정책에 대해 베트남 유럽 상공 회의소 (EUROCHAM)에 답변하기 위해 공식 공문 2014 / TCT-DNNCN을 발행했습니다.



6. Official 국 세 청 공 문 No. 2014/TCT-DNNCN: “직원비자 및 임시거주증 신청 비용”에 대한 PIT과세 여부



고용주가 베트남 조직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임시거주증 및 비자 신청/ 연장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이는 고용주의 책임이며, 이러한 비용은 급여의 과세소득 및 직원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베트남 조직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 비자신청 수수료가 조직의 내부 규정 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경우 PIT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규정된 기준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PIT 계산 목적으로 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고용주가 지불 한 임시거주증, 비자신청 비용이 직원의 이익인 경우, 이러한 비용은 외국인 직원의 급여 및 임금으로 인한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공식 공문에서 과세 당국은 이전의 여러 지침 (3867/TCT-TNCN)을 대신하여 직원을 대신하여 회사가 지불 한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거주증 및 비자 신청 비용에 대한 PIT 처리에 대해 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7. 공문 No. 3552/CT-TTHT: 직원들에게 선물 증정시 PIT 과세 여부

2020년 4월 8일, 호치민시 세무국은 PIT 규정에 관한 공문 No. 3552 / CT-TTHT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원 개인이 행운 추첨 또는 상품권 형태로 회사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 이 지급은 직원의 이익으로 간주되며 급여 및 과세 대상 개인 소득에 포함됩니다.

단, 시행규칙 No. 111 / 2013 / TT-BTC에 규정된 선물로 정해진 상품의 경우, 과세 소득이 아니며, 회사가 종업원인 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일부 지방 세무 당국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선물에 해당되는 경우 PIT를 신고하고 납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세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전에 이 문제에 대해 세무 당국과 직접 논의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Contact

고객님께서 조세, 회계, 가격 이전, 외국인의 활동, 투자, 세관 및 노동자, 투자 정책, 생산 영업 과정에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자문을 더 필요하시면 우리 Grant Thornton 의 전문가 들하고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기 소식을 다운로드 하고 싶으신 경우, 우측 링크를 통하여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x Hub](#)

Head Office in Hanoi

18th Floor, Hoa Binh International Office Building
106 Hoang Quoc Viet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T + 84 24 3850 1686
F + 84 24 3850 1688

Hoang Khoi

National Head of Tax Services
D +84 24 3850 1618
E khoi.hoang@vn.gt.com

권혁준 (Kwon Huyck Jun)

Director – Korean Desk
D +84 24 3850 1679
E hyuckjun.kwon@vn.gt.com

Bui Kim Ngan

Tax Director
D +84 24 3850 1716
E ngan.bui@vn.gt.com

Nguyen Dinh Du

Tax Partner
D +84 24 3850 1620
E du.nguyen@vn.gt.com

Vishwa Sharan

Director – Transfer Pricing
D +84 327 345 053
E Vishwa.Sharan@vn.gt.com

김민제 (Kim Minje)

Manager – Korean Desk
D +84 379 591 011
E minje.kim@vn.gt.com

Ho Chi Minh City Office

14th Floor, Pearl Plaza, 561A Dien Bien Phu Street
Binh Thanh District, Ho Chi Minh City, Vietnam
T + 84 28 3910 9100
F + 84 28 3910 9101

Nguyen Hung Du

Tax Partner
D +84 28 3910 9231
E hungdu.nguyen@vn.gt.com

Tran Nguyen Mong Van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3
E mongvan.tran@vn.gt.com

Masato Karoji

Director – Japanese Desk
D +84 28 3910 9135
E masato.karoji@vn.gt.com

Valerie – Teo Liang Tuan

Tax Partner
D +84 28 3910 9235
E valerie.teo@vn.gt.com

Nguyen Thu Phuong

Tax Director
D +84 28 3910 9237
E thuphuong.nguyen@vn.gt.com

Lac Boi Tho

Tax Director
D +84 28 3910 9240
E tho.lac@vn.gt.com

© 2020 Grant Thornton (Vietnam) Limited - All rights reserved.

'Grant Thornton' refers to the brand under which the Grant Thornton member firms provide assurance, tax and advisory services to their clients and/or refers to one or more member firms, as the context requires. Grant Thornton International Ltd (GTIL) and the member firms are not a worldwide partnership. GTIL and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Services are delivered by the member firms. GTI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GTIL and its member firms are not agents of, and do not obligate, one another and are not liable for one another's acts or omissions.



grantthornton.com.vn